시간당

최소한

$7.15을

받고 계십니까?

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이 발효되었습니다!

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,
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.

212-621-0483

월요일 – 금요일
(오전 8시부터 오후 5시)

법에 의해, 이민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거주자들은 반드시 시간당 $7.15 (팁 포함)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.

일반 최저 임금:	$7.15/시간
웨이터/웨이트리스 및 테이블 청소 근로자 급료:	$4.60/시간
기타 팁을 받는 근로자:	$5.40/시간

한 주의 기본 업무 시간은 40시간입니다.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, 대부분의 뉴욕 근로자는 초과 시간당 기본 임금의 1.5배의 급료를 받아야만 합니다.

뉴욕주 노동청

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

뉴욕주 노동청은 균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
고용주/프로그램(Equal Opportunity Employer/Program)입니다.
장애인은 요청시 기타 보조 및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